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28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11. 15.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28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15.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논산의제21 등의 용어를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협의회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서 ‘논산의제21’ 문구를 삭제(안 제1조)
-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름으로 개정(안 제3조)
- 다. ‘논산의제21’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계획 등’으로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제1항제1호~제7호, 제7조제1항)
- 라.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다.’ 내용 신설(안 제6조)
- 마. 협회회의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의 내용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1364호(2023. 10. 24.)]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31003호(2023.10.16.)]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1726호(2023.10.10.)]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년 10. 10. ~ 2023. 10. 30. (20일)
 - 나) 예고결과 : 논산시 미래전략실 의견 제출(붙임 참고)
 - 다) 검토의견
 - ① 개정이유 문구 수정 : 수정안 반영
 - ② 제6조의2 문구 수정 : 수정안 반영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탄소중립정책과(041-635-4414)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 논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을 “위하여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논산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논산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논산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추진·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6조(비전·목표)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는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논산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② 논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한다.

④ 논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의회공인조례”를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박 승 선
	기	후	변	화	정
	책	팀	장		심 영 수
	담	당	자		김 준 용 (746-55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p> <p>1. <u>“논산의제21”이라 함은 시민, 기업, 논산시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 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 논산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u></p> <p>2. <u>“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u></p>	<p>제1조(목적) ----- ----- ----- <u>위하여</u>----- ----- ----- -----.</p> <p>제3조(정의) ----- -----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 제2조를 따른다. <u><삭 제></u></p> <p><u><삭 제></u></p>

2. 논산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논산의제21의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참여유도 및 협조체제 구축
 5. 논산의제21과 관련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6. 논산의제21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논산의제21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논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논산시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임원, 환경전문가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7. ----- 지속가능발전 계획-----

- 제7조(구성) ① -----

----- 지속가능발전 계획-----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협의회 의 회장으로 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 제출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의 회장은 시장에게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문서관리)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환경과장 박 승 선

□ 입법예고 의견제출

1. 제출자 : 논산시청 미래전략실
2. 의견내용

입법예고 내용	제출 의견	비 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협회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회의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논산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기 전 부터 이미 사용하지 않은 용어로 최초 부터 母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신설)을 개정 이유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반영
제6조의2(기능)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추진·평가 2.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 7.	○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계획 주체는 논산시장이며, 지속가능발전협회는 민관협력기구로 실천 단체임. 일부조항을 계획에서 실천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3. 검토결과 : 총2건(반영 2건)

현행	당초(입법예고안)	변경(조치계획안)
-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협회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회회의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논산의제21 등의 용어를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협회회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고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협회회의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당초(입법예고안)	변경(조치계획안)
<p>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논산의제21의 추진 및 평가 2. 논산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논산의제21의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참여유도 및 협조체제 구축 5. 논산의제21과 관련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6. 논산의제21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u>논산의제21</u>과 관련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p>제6조의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추진·평가 2.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7. ----- 지속가능발전 계획----- ----- ----- 	<p>제6조의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추진·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6.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7. ----- 지속가능발전 계획----- -----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논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등)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민, 기업, 시 등이 협력하는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